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19가합57664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전 문

원고 1. 주식회사 신▽리

서울 송파구 ○○○로

대표자 사내이사 정◆영

2. 김×태

하남시 ○○로

3. 신▽식

파주시 ○○로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명천

담당변호사 최윤서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병일, 손흥수

피고 1. 주식회사 대●□♣건설

아산시 ○○○길

대표이사 이□만

2. 엘●●●컴퍼니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

대표이사 이▼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민, 박정규

3. 주식회사 아◇◇◇이저축은행

부산 부산진구 ○○○로

대표이사 장♡홍

변론종결 2020. 10. 29.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1. 원고 주식회사 신▽리의 피고 주식회사 대●□♠건설에 대한 2010. 4. 30.자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3,700,00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 주식회사 신▽리의 피고 엘●●●컴퍼니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 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0. 4. 30. 접수 제799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담보하는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피고 주식회사 아◇◇◇이저축은행은,
 - 가. 원고 김×태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0. 4. 30. 접수 제797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 나. 원고 신▽식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0. 4. 30. 접수 제797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 다. 원고 김×태, 신▽식에게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0. 4. 30. 접수

제797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신▽리(상호가 '한♡◇@산업진흥 주식회사' 에서 '한□□스팸 주식회사'를 거쳐 '주식회사 신▽리'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원고 신▽리'라고 한다)는 택지조성사업, 주택건설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2009. 10. 13. 설립되었다.

나. 원고 신▽리는 2010. 4. 30. 주식회사 경▲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경▲상호저축은행.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경▲저축은행'이라 한다)과, 경▲저축은행으로부터 37억 원을 변제기 2011. 4. 30., 약정이율은 연 10%,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연체기간 3개월 이하 연 9%, 연체기간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연 10%, 연체기간 6개월 초과 연 11%로 각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원고 신▽리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고 하고, 채권자 경▲저축은행의 원고 신▽리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다. 2010. 4. 30.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원고 김×태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원고 신▽식 소유의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원고 김×태, 신▽식이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 이 사건 제2부동산, 이 사건 제3부동산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이라 한다), 양▲홍 소유의 별지 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4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과 이 사건 제4부동산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 ①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0. 4. 30. 접수 제7978호로 마친, 근저당권자 경▲저축은행, 채무자 원고 신▽리, 채권최고액 48억 1,000만 원으로 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에 관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 '이 사건 제3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고, 이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제1 내지 3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며, 이 사건 제1 내지 3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1 내지 3근저당권'이라 한다)
- ② 이 사건 제 4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0. 4. 30. 접수 제7995호로 마친, 근저당권자 경▲저축은행, 채무자 원고 신▽리, 채권최고액 48억 1,000만 원으로 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4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고, 이 사건 제4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4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금융위원회는 2011. 10. 20. 이 사건 대출금 채권과 이 사건 각 근저당권 등을 경▲저축은행에서 피고 주식회사 아◇◇◇이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예♡◇@은행,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아◇◇◇이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계약이 전결정을 하였다. 피고 아◇◇◇이저축은행은 이 사건 제1 내지 3근저당권 설정등기에 관해서는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2. 4. 25. 접수 제8866호로, 이 사건 제4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해서는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2. 4. 25. 접수 제8870호로, 각 2011. 10. 20. 계약이전 결정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아◇◇◇이저축은행은 2015. 8. 13. 이 사건 대출금 채권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피고 주식회사 대●□♣건설(상호가 '주식회사 대▽▽▽개발'에서 '대◇◇◇◆곤큐셀 주식회사'를 거쳐 '주식회사 대●□♣건설'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대●□♣건설'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피고 대●□♣건설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이 사건 제4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해서만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5. 9. 15. 접수 제20908호로, 2015. 8. 13. 확정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 아이비케이 저축은행은 2015. 9. 18. 원고 신▽리에 위 마. 항 기재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사. 피고 대●□♣건설은 2015. 9. 11. 이 사건 대출금 채권과 이 사건 제4근저당권을 피고 엘●●●컴퍼니 주식회사(상호가 '와▽▽▽비건설 주식회사'에서 '엘●●●컴퍼니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엘●●●컴퍼니'라고 한다)에 양도하였다. 피고 엘●●●컴퍼니는 이 사건 제4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5. 9. 15. 접수 제20909호로, 2015. 9. 11.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최종 이자 납부일인 2013. 9. 13.로부터 5년이

지난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금융기관으로서 상인인 경▲저축은행의 원고 신▽리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므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대하여 채무승인의 효력이 있는 일부 변제가 2013. 9. 13. 마지막으로 있었음을 원고들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소송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9. 10. 3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상사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피고 아◇◇◇이저축은행이 2015. 8. 13. 이 사건 대출금 채권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피고 대●□♣건설에 양도하고 2015. 9. 18. 원고 신▽리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피고 대●□♣건설은 2015. 9. 11. 이 사건 대출금 채권과 이 사건 제4근저당권을 피고 엘●●●컴퍼니에 양도하였으며, 피고 엘●●●컴퍼니는 이 사건 제4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5. 9. 15. 접수 제20909호로, 2015. 9. 11. 확정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 대●□♣건설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피고 엘●●●컴퍼니에 양도한 후 그 양도사실을 원고 신▽리에 통지하였거나 원고 신▽리가 이를 승낙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대●□♣건설과 피고 엘●●●컴퍼니는 위 채권양도로서 원고 신▽리에 대항할 수 없고, 피고 대●□♣건설이 여전히 원고 신▽리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관한 채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4) 피고 대●□♣건설은, 자신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제3자인 주식회사 에♡◇웨이(이하 '에♡◇웨이'라고 한다)에 양도하였으므로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대●□♣건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에♡◇웨이에 양도하였다거나 그 채권양도사실을 원고 신▽리에 통지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대●□♣건설은 원고 신▽리에 대하여 여전히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채권자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대●□♣건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 신▽리로서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채권자인 피고 대●□♣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5) 피고 엘●●●컴퍼니도 원고 신▽리의 시효완성 주장을 다투면서 자신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채권자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 신▽리로서는 피고 엘●●●컴퍼니에 대하여 이 사건 제4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담보하는 채무(결국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이다)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6) 또한, 근저당권의 양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1 내지 3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내지 3근저당권의 등기부상 양수인인 피고 아◇◇◇이저축은행은,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 김×태 내지 신▽식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3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아◇◇◇이저축은행은 이 사건 대출금 채권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이미 피고 대●□♠건설에 양도하였고, 등기부상으로만 피고 아◇◇◇이저축은행이 근저당권자로 되어 있을 뿐이므로 원고, 신▽리의 청구는 배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피고 아◇◇◇이저축은행이 이 사건 제1 내지 3근저당권의 최종 양수인으로 부기등기되어 있는 이상 위 피고가 이 사건 제1 내지 3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 엘●●●컴퍼니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법인격부인 관련 주장

(1) 원고 신▽리의 실질적 소유자인 차♡복은 원고 신▽리 외에 주식회사 태♡기업(이하 '태♡기업'이라 한다)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 신▽리와 태♡기업은 모두 형해화된 법인으로서 그 배후에 있는 차♡복의 개인기업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차♡복의 직원인 양▲홍 또한 차♡복의 대리인 내지 차♡복의 의사를 대행하는 사람에 불과하였다. 차♡복은 원고 신▽리나 태♡기업, 양▲홍 등을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충남 태♡군 원♡면 황△리 2**-1 외 4필지 일원에서 '웨◇◇◇치팜 리조트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었고, 이 사건 대출금 채무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한 모든 권한은 실질적으로 차♡복이 행사하였다. 따라서 법인격부인론의 유추적용에 따라, 차♡복이 태♡기업, 양▲홍 등을 통하여 한 시효중단행위의 효력은 원고 신▽리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런데 피고 엘●●●컴퍼니와 차♡복은 2015. 12.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차♡복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권과 토지소유권 등 일체를 피고 엘●●●컴퍼니에 이전하여 피고 엘●●●컴퍼니가 이 사건 사업계획을 총괄하고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는 내용의 '웨◇◇◇치팜리조트 투자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 엘●●●컴퍼니로서는, 이 사건 협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에는, 이 사건 협약의 실질적 당사자인 차♡복이 자신의 형해화된 개인법인인 원고 신▽리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한 시효소멸을 주장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협약이 종료된 시점인 2017. 5. 15.경 또는 차♡복이 태♡기업과 양▲홍을 통해 피고 엘●●●컴퍼니에 대해 이 사건 협약의 해제를 통보한 2017. 6.경까지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피고 아◇◇◇이저축은행은 2015. 8. 13. 이 사건 대출금 채권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피고 대●□♠건설에 양도하였는데, 차♡복은 자신을 사실상 대리 내지 대행하는 직원인 양▲홍을 위 2015. 8. 13.자 채권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입회하게 하였으므로, 이로써 차♡복이 위 채권양도에 동의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차♡복은 태♡기업과 양▲홍 명의로 2018. 1. 10. 및 2018. 8. 6. 피고 엘●●●컴퍼니에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승인하는 내용의 각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므로, 위 2018. 1. 10. 및 2018. 8. 6.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시효는 중단되었다.

나) 표현대표이사 관련 주장

설령 원고 신▽리나 태♡기업을 형해화된 차♡복의 개인회사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차♡복은 원고 신▽리의 실질적 대표임을 표시하면서 위 각 시효중단행위를 하였으므로, 표현 대표이사의 법리에 따라 그 시효중단행위의 효력은 원고 신▽리에도 미친다.

2) 판단

가) 법인격부인 관련 주장에 관하여

(1)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 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에 있는 사람이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위와 같이 배후자가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다10398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은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회사의 법률행위로 인한 법적 효과를 배후자인 개인에게도 부과하는 것인데, 이러한 기존의 전통적인 법인격 부인론과 달리 개인이 부담한 채무를 회사재산으로 변제하게 하기 위하여 개인의 채권자가 법인을 상대로 채권채무관계를 주장하는 이른바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은 형식적인 채무자도 아니고 실질적인 채무자도 아닌 법인에게 배후자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집행의 편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경계하여야 한다. 즉, 법인격 부인론을 역적용하는 경우, 법인격 제도의 실현과 회사의 자본충실을 저해하고,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과의 이해가 충돌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인격의 남용이라는 주관적 목적에서 나아가 객관적으로도 자본충실의 원칙에 위배될 만큼 현저하게 법인격이 형해화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2) 피고, 엘●●●컴퍼니의 법인격부인 관련 주장은, 원고 신▽리와 태♡기업이 모두 형해화된 법인으로서 그 배후에 있는 차♡복의 개인기업에 불과하여,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 법리에 따라 차♡복이 한 각 시효중단행위의 효력이 원고 신▽리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도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10호증, 을나 제20, 2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잠실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 엘●●●컴퍼니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 신▽리가 차♡복의 개인기업에

불과할 정도로 형해화되었다거나 차♡복이 원고 신▽리의 법인격을 남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엘●●●컴퍼니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법인격 형해화 또는 남용 요건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 사건 대출금 채무 발생일은 2010. 4. 30.이다. 그런데 이 법원의 잠실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 채무 발생일 무렵인 2010년 1분기 원고 신▽리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확정)이 0원인 사실, 원고 신▽리의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내역이 없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신▽리의 2010년 1분기 매입세액(확정)은 406,296,545 원인 사실도 인정되고, 원고 신▽리는 2009. 10. 13. 설립된, 택지조성사업, 주택건설업 등을 하는 회사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인 원고 신▽리에 설립 초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고 매입세액만 발생하였으며 원천징수가 이루어진바 없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신▽리의 자본 부실의 정도가 그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고 보기에 이르렀다거나, 원고 신▽리와 차♡복 사이에 재산이나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

② 을나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차♡복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행위위반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합321호)의 판결문에서 '차♡복이 원고 신▽리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라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차♡복이 원고 신▽리의 실질적 대표로서 원고 신▽리를 운영하는 것을 넘어 원고 신▽리를 실질적으로는 개인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부족하다.

③ 차♡복이 개인채무의 면탈 등을 위해 원고 신▽리의 법인격을 남용하여 원고 신▽리로 하여금 경▲저축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④ 을나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엘●●●컴퍼니가 원고 신▽리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차 3045호 양수금 청구 사건에서 2019. 10.경부터 2020. 6.경까지 원고 신▽리의 법인등기부상 주소지나 원고 신▽리의 대표자 사내이사 정◆영의 법인등기부상 주소지로

소송서류가 '이사불명' 등을 이유로 송달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 신▽리가 법인격이 형해화된 법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양▲홍이 차♡복의 대리인 내지 차♡복의 의사를 대행하는 사람에 불과하고, 피고 엘●●●컴퍼니 주장의 시효중단행위를 함에 있어 차♡복의 대리인 내지 사자로서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설령 양▲홍의 행위가 차♡복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신▽리의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표현 대표이사 관련 주장에 관하여

피고 엘●●●컴퍼니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차♡복이 원고 신▽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피고 엘●●●컴퍼니 주장의 각 시효중단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엘●●●컴퍼니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 신▽리의 피고 대●□♠건설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 및 원고 신▽리의 피고 엘●●●컴퍼니에 대한 이 사건 제4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제4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담보하는 채무(즉,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제1 내지 3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내지 3근저당권의 등기부상 양수인인 피고 아◇◇◇이저축은행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 김×태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 신▽식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 김×태, 신▽식에게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제3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훈 판사 이준현 판사 백상빈

별지 1

목록

1. 충남 태원군 원면 황리 3**-1 전 111㎡ 중 지분 111분의 21
2. 충남 태원군 원면 황리 3**-1 답 26㎡
3. 충남 태원군 원면 황리 3**-3 답 93㎡
4. 충남 태원군 원면 황리 3**-1 답 1,574㎡
5. 충남 태원군 원면 황리 3**-1 답 1,293㎡
6. 충남 태원군 원면 황리 4** 전 271㎡
7. 충남 태원군 원면 황리 4**-7 답 1,047㎡
8. 충남 태원군 원면 황리 4**-8 답 496㎡
9. 충남 태원군 원면 황리 4**-2 임야 1,391㎡
10. 충남 태원군 원면 황리 4** 답 2,172㎡
11. 충남 태원군 원면 황리 4** 답 3,762㎡
12. 충남 태원군 원면 황리 산1**-3 임야 22,512㎡. 끝.

별지 2

목록

충남 태원군 원면 황리 4**-4 임야 3,224㎡. 끝.

별지 3

목록

충남 태원군 원면 황리 4**-2 임야 8,920㎡. 끝.

별지 4

목록

1. 충남 태원군 원면 황리 2**-1 유지 720,433㎡
2. 충남 태원군 원면 황리 2**-1 제1호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거시설 125.87㎡
3. 충남 태원군 원면 황리 2**-1 제2호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거시설 125.87㎡
4. 충남 태원군 원면 황리 2**-3 대 271㎡
5. 충남 태원군 원면 황리 5**-1 시멘트 벽돌조 알루미늄지붕 단층창고 197.5㎡
6. 충남 태원군 원면 황리 2**-4 유지 76,622㎡
7. 충남 태원군 원면 황리 2**-5 유지 65,623㎡
8. 충남 태원군 원면 황리 2**-6 유지 339㎡
9. 충남 태원군 원면 황리 2**-7 유지 371,126㎡
10. 충남 태원군 원면 황리 2**-8 유지 29,710㎡
11. 충남 태원군 원면 황리 2**-9 유지 26,215㎡
12. 충남 태원군 원면 황리 2**-10 유지 1,715㎡
13. 충남 태원군 원면 황리 2**-11 유지 91,380㎡
14. 충남 태원군 원면 황리 2**-12 유지 1,665㎡
15. 충남 태원군 원면 황리 2**-13 유지 3,133㎡. 끝.